

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5. 11 선고 2020가단147709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주식회사 A

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희성, 유병연, 김정원

피 고 1. B

2.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5. 11.

주 문

1. 피고 B은 원고에게 6,658,552원 및 그 중 2,429,419원에 대하여 2020. 8. 27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4.89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2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/9 지분에 관하여,
가. 피고들 사이에 2017. 5. 10.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.
나. 피고 C은 피고 B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(무변론 판결)

판사 반정모

별지